

일반논문

3.1운동과 공화주의: 공화국수립일을 제안하며*

이나미(한서대)

이 글의 목적은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과 건국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3.1운동의 공화주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3월 1일을 ‘공화국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제안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건국절’ 논쟁의 정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1운동의 거국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동의하고 또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 중 상당수가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천절의 존재로 인해 ‘건국’이라는 용어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공화제를 지향했다.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세웠으며 그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공화주의였다.

* 주제어: 3.1운동, 공화국, 공화주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 건국절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19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선언과 건국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3.1운동의 공화주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3월 1일을 ‘공화국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제안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건국절’ 논쟁의 정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6300).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최초 제정한 국경일은 두 가지로서 '독립선언일'(3월 1일)과 '건국기원절'(음력 10월 3일, 현 개천절)이다(조덕천 2017, 194-199). 임시정부는 3·1운동 1주년을 앞둔 1920년 2월 "3월 1일은 대한인이 부활한 성일(聖日)이다. 독립선언 최초의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라," "이날에는 상인은 상업을, 농부는 농업을, 공인은 공업을, 학생은 학업을 모두 폐지하고 2천만 민이 일제히 대한의 독립만세를 절규하라."는 내무부 포고를 공포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3월 1일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날이므로 우리가 이날은 영구히 기념할 국경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가졌다(윤대원 2017, 56-57). 3월 1일은 이렇듯 본래는 독립이 선포된 날로 기념했으므로, 단순히 3.1운동이 일어난 삼일절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1948년 건국설'을 반대하는 '1919년 건국설'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을 근거로 삼아 4월 11일을 건국절로 기념하고자 하나, 이 글은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포한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자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견이 있지만 3.1운동의 거국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동의하고 또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 중 상당수가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조선, 대한제국이 있었고 더 나아가 임시정부도 인정한 개천절은 단군이 세운 우리의 최초의 국가를 기념한 것이므로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¹⁾ 이에, 본 논문의 두 번째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국'이라는 용어 대신, '공화국 수립'이라는, 보다 명확

1) 단군설화는 '전설'이나 '이야기'로 여겨야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또한 대체로 파시즘이 고대의 전설을 민족의 출발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제로 나치즘을 지지한 안호상이 적극적으로 단군신화를 강조했다.

한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도 '공화국 창건일'(Republic Day)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셋째, 본 논문은, 1919년 3월 1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날 한국인들에 의해 독립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새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 뿐 아니라 이날 배포되어 널리 읽히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3월 1일 탄생한 공화국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의 명시를 근거로 드는데 대한민국은 그 전에 3.1운동 때 세워졌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3.1운동 때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이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에서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으며, 당시 '조선독립만세' 또는 '대한독립만세'라고 모든 이가 외쳤다. 이는 독립국으로서의 '국가'와 자주민인 조선인의 '시민사회'가 동시에 탄생했음을 알린 것이다. 또한 3.1운동 당시에 이미 '가정부', 즉 임시정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돌았다. 따라서 새 국가가 3.1운동 때 독립선언과 더불어 탄생했고 뒤이어 국가의 입법기관인 의회(임시의정원)와 정부(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며 임시헌장과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생겼다. 임시헌장은 선서문에서 "민국 원년 3월 1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을 선언했다. 이는 3.1운동이 헌법의 권원(權原)임을 나타낸다(이영록 2017, 6).

한 존재는 그 이름이 붙여진 날 생겨난 것이 아니요 그 실체가 탄생

한 날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3.1운동에서 대한이 독립국 임이 천명될 때 생겨났다고 보아야 한다.²⁾ 미국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삼는다. 당시 이 선언에 대해 국제적 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국제적 승인은 7년 후인 1783년에 받는다. 또한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독립선언의 주체 또는 국가명이 현재의 명칭인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다. 독립선언의 주체는 '13개 식민지들 (the Thirteen Colonies)', 또는 '아메리카 13개 연합 주들(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현재의 미국 국가명 USA는 나중에 지어진다. 베트남은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 후 8년간 프랑스군과 싸우면서 독립을 실현했다. 네덜란드연방공화국은 1581년 독립을 선언하고 70년 가량이 지난 1648년에서야 그 존재를 공인받았다(권보드래 2019, 34). 중국은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날인 1949년 10월 1일, 인도는 인도국민회의가 영국의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방안을 수락한 날인 1947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간주한다. 두 날 모두 정부수립일이 아니다.³⁾

3.1운동 당시 모든 조선인이 고종의 죽음을 추모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의미하는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새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행동이었다. 일부 유학자들이 군주의 상중에

2)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명칭은 이미 『독립신문』 1899년 4월 24일자 논설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이영재 2019, 18). “당장 눈 앞에 적은 이익을 생각하여 동전만 지어내더니 지금 와서 비교하여 보면 이해 다소가 어찌하뇨. 어찌 하였던지 제정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계를 위하여 대단히 애석히 여기노라”(필자 윤편)

3) 전우용에 의하면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부르는 나라는 북한 정도이다. 김민철과 심용환도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굳이 풀라야 한다면 3.1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미디어오늘』 2018.8.13). 김광재는, “새로운 나라,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인 나라, 왕이 아닌 인민(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의 출발일(축발일)은 3·1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와 유사한 처지인 대다수 나라들 역시, 일정기간 진행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부여한 출발일(축발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광재 2019, 119).

만세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심지어 유림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북 영천 유생 홍종현은 “국민의 애국사상에 따라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른 것”이라고 했다. 만세의 의미는, ‘만세를 부르면 독립된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독립이 되었으니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의미로 발전되었다(이기훈 2019, 99-101). 만세는 전국에서 울려 퍼졌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경성고보 4학년생 상훈, 평양에서 송실학교 학생 노원찬, 황해도 해주에서 남본정 교회 오현경 목사, 평안남도 안주에서 무역상 전성걸이 만세를 불렀다(미디어오늘 2019.3.4.). 이 중 오현경 목사와 두 아들 오인명, 오의명은 이 일로 일제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⁴⁾ 박은식에 의하면 당시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김광재 2019, 81). 아이, 노인, 환자, 친일인사, 공직자 등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이가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의 3.5% 이상이 참여하면 그 시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5-8).

3월 1일 오후 1시 평양에서 열린 집회 명칭은 아예 ‘독립 축하회’였다. 경찰과 헌병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관했고 관공서 앞에 독립선언서가 붙었으며 연도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어떤 군수는 ‘독립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공식문서를 보냈다. 평양남도 일원에서는 군수와 경찰서장 연명으로 독립을 알리는 문서가 면장과 구장에게 교부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조선이 독립되어 총독부 기관은 필요 없으니 당장 조선 땅에서

4) “오현경 목사가 악형을 당해 (...) 3부자가 피옷을 입어 (...) 요사이 모국으로부터 온 통신을 의지한 즉, 황해도 해주교회 목사 오현경씨와 그 자녀 오인명, 오의명 양씨 등 세선생은 이번 우리 민족 대활동에 그 열성과 정력을 다 바쳐 활동한 바 지난달에 왜적에게 붙들려 감옥에 갇힌 후 몸쓸 악형을 당하여 전신에 피가 흘러 붉은 옷을 입고 고문을 받는 중이더라”(『신한민보』 1919.4.29.)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다. 평안도 일부 지역에는 해방구가 조성되어 주민자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순창군 신창면사무소에 '대한 독립운동준비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리고 태극기가 게양됐다. 선천군 운중면 신미도에서는 면사무소를 주민들이 인수해 20여 일간 자치적 행정 사무를 집행했고 의주군 옥상면에서도 주민들이 자치업무를 수행했다(권보드래 2019, 29-31).

1919년 3월 17일 정평군 고산면에서는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어른들은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고 학생 15명은 '조선건국만세'라고 외쳤다(이기훈 2019, 110). 즉 3.1만세운동에서 '건국'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또한 태극기는 독립국가와 국민의 표상이 되었다(이기훈 2019, 99).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밑줄은 필자)라고 하여,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명시했다.⁵⁾

그러나 이미 이전에 조선, 대한제국 등의 국가가 있었고 더 나아가 임시정부도 인정한 개천절은 단군이 세운 우리의 최초의 국가를 기념한 것이므로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실상 건국절을 특별히 기념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개천절과 같은 의미의

⁵⁾ 이러한 점에서 3.1운동은 3.1혁명으로 불릴 만 하지만 아직은 3.1운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일단 3.1운동으로 부르기로 한다. 지수철은, 제헌헌법의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구절은,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 수립일(1919년 4월 13일)이나 대한민국정부수립일(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민족대표'들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 날, 즉 3월 1일이 건국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지수철 2016, 18). 전우용도 헌법이 건국을 1919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김민철에 의하면 1948년 건국절을 내세우면 반공세력이 건국 공로자가 되고 친일행적은 이전의 일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쉽게 된다고 했다(『미디어오늘』 2018.8.13.).

개국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독립절, 정부수립 등을 기념하고 있다(이영재 2019, 21).

이때 '건국' 대신, '공화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도 '공화국 창건일(Republic Day)'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3·1운동은 반외세 독립운동일 뿐 아니라 공화제로서의 새 국가를 탄생시키겠다는 국민적 열망의 실현이었다. 따라서 이후 형성되는 많은 임시정부들의 정통성을 실천적으로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김광재 2019, 93).⁶⁾

3. 끊어지지 않은 주권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국가 개념을 적용할 때 더욱 가능해진다. 국가는, 베버적 의미에서는 '일정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요구하는 공동체'인데, 이는 좁은 의미로서의 국가이다. 넓은 의미의 국가는 시민사회를 포괄한다. 그럼시는, 정치사회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국가 개념과 함께,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김호기 1993, 41). 후자의 경우 국가는 강제 뿐 아니라 동의도 필요로 하며, 단지 지배의

6) 김광재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절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건국절을 8·15로 지정하지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3·1운동에 대한 혁명적 성격을 재해석하여 '3·1운동'이 아닌 '3·1혁명' 또는 '3·1대혁명'으로 명명하고 민주공화국의 발원일로서의 그 헌법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3월 1일이 혁명일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일(축발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건국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앞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 3월 1일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3·1혁명'과 그로 인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광재 2019, 110-111).

도구만은 아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이때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국가기구(협의의 국가)를 포함한 개념이다(이규영 1995, 646).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구는 외곽호에 불과하고 정당, 노조, 및 다양한 문화, 이데올로기적 조직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야말로 요새와 보루이다(Gramsci 1971; 김호기 1993, 48). 이는 그람시가 부르주아 국가의 견고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지만 오랜 중앙집권 전통의 굳건한 단일국가 역사를 가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제에 의해 국가기구는 무너졌지만 '시민사회로서의 국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⁷⁾ 일제강점 직전인 1910년 6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는 “국가는 중민(衆民)의 단성체(團成體)요 주권은 중민(衆民)의 합성력(合成力)”이라 했는데(전종익 2017, 227). 이는 시민사회로서의 국가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6월에 일제의 강점 계획이 알려지자 융희황제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신한민보 1910.7.6.; 김도훈 1999, 256). 1910년 7월 『신한민보』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국민이니 대한국가가 아니면 의무를 행함이 불가”하다고 했으며 “현 정부가 일본에 투항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은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박찬승 2013, 110). 1911년에 박용만이 주장한 무형국가론은 한국 국민이 수립하는 정부가 우리의 국가라는 논리이다.

한반도에 한국인들은 그대로 있었고 이들에게 주권은 귀속되었으며 영토도 사실상 여전히 한국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므로, 일제는 ‘정권’을

7) 일제의 문화통치는 이렇게 강고한 한국인의 시민사회를 완전히 식민화하기 위한 일종의 ‘진지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찬탈한 것이었을 뿐, 주권, 영토,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는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은 1910년 8월 29일 순종의 주권 포기는 국민에 대한 주권 양도라고 선언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국왕에서 국민으로 이어진 것임을 주장했다.

융희황제가 삼보(三寶, 토지, 백성, 정치, 즉 국가 의미: 필자)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오인동지(吾人同志)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기간(基間)에도 순간도 정식(停息)이 무(無)함이라. 오인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피(彼) 제권(帝權)소멸의 시(時)가 즉 민권발생의 시요 구한(舊韓)최종의 일일(一日)은 즉 신한(新韓)최초의 일일이니. 하이고(何以故)오. 아한(我韓)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한인의 한(韓)이오,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간(韓人間)의 주권수수난 역사상 불문법의 국현이오, 비한인에게 주권양여난 근본적 무효요, 한국민성(韓國民性)의 절대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는 즉 아국민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니 이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유하다

즉 순종이 국가를 포기한 날은 우리가 그것을 계승한 날이니 그 사이 단 한순간도 국가의 주권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완전한 상속자니 그 황제권 소멸의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요 구한국의 최후의 하루가 바로 신한국 최초의 하루라고 하여 말 그대로 단 한순간도 주권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경술년 순종의 주권포기는 한국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로 우리는 당연히 국가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특권과 의무의 강조는, 순종이 주권을 쥐서 국민이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제의 강점을 부정하고 국민이

국가와 주권의 주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쟁취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찌보면 대동단결선언은 무혈혁명, 명예혁명의 선언이다.

임시정부는 일제가 우리의 '정권'을 찬탈했지 '주권'을 빼앗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불법국가'로 규정되어 그 존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불법국가(Unrechtsstaat)라는 개념은 1853년 프로이센의 페터 라이헨스베르거의 원이 사용한 용어로 법치국가 개념에 대응하며 '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협하는 국가'로 정의되었다. 이후 주로 나찌 정권 등 청산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의미로 쓰였다(표광민 2019, 9). 3.1운동은 불법국가 폐지 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인 동시에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33인 대표의 독립선언서도, 독립선언이 보편적 정의의 실현임을 강조했다.⁸⁾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김광재에 의하면, 1933년 체결된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⁹⁾ 제3조는 “국가

8) 1919년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가란 점과, 조선인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란 점은 안창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창호 2015; 이나미 2019b). “3월 1일에는 전국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천만 국민이 다 황제 ... 여러분이 다 주권자이외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여러분의 노복이외다.”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적에게 납세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납세할 것, 일본의 기장을 사용치 않고 대한민국의 기장을 사용할 것, 가급적 일화(日貨)를 배척할 것, 일본 관청에 송사, 기타의 교섭을 단절할 것. 이런 것도 다 평화적 전쟁이요, 이것도 힘있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 이것도 독립전쟁이외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국가를 신건(新建)할 때에, 대한의 법률을 신성하고 최고인 것으로 알아 전국민이 이에 복종해야 합니다. ... 독립운동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는 국가가 사의를 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 상(賞)할 때 상함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 우리 국민 헌법에 사형이 없지만 무슨 법을 임시로 정하여서라도 죽일 자는 죽여야 합니다. ... 무릇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따르므로 사법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 인구세, 소득세, 동포들의 애국 열성으로 내는 원납금, 혹은 외국에 대한 차관 등이 우리의 재원이 될 것입니다. ... 내가 말하는 중에 제일의 요지는 국민개병주의와 국민개납주의입니다.”

9) 몬테비데오협약은 미국 및 중남미국가를 당사국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이 협약은 국가성을 판별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에서는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는 국가의 개념을 총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정부, 외교능력이 그것이다. 외교능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이기 때문에 영토는 대한 제국의 구성원인 한국인들이 상속한 것이므로 여전히 한국의 영토로 존재한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과는 정체성이 다른, 한반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영구적 주민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가 정부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김광재 2019, 105-106). 또한 당시 임시정부 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자임한 기관들이 일정 정도 외교능력도 보여주었다.

임시정부는 현실적인 국가 운영을 위하여 중요 지점에 임시 교통사 무국을 두어 한반도 본토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교통국은 통신과 연락 뿐 아니라 정부의 자금모집, 국내의 정보수집, 정부의 지령과 서류를 국내에 전달하는 일, 교통국의 조직과 독립운동을 위하여 인물을 소개하고 연락하는 일 등도 실행했다. 또한 연통제를 두어 국내에서 지방행정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19년 말의 시점에서 국내에는 다섯 개의 감독부가 조직되었으며 적어도 10개소에 총감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연통각부는 5일마다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꾀하였다. 또한 1943년 12월 1일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담은 것은 결코 강대국의 동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펼친 독립운동의 성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일정 정도의 외교능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김광재 2019, 106).

까지 갖춘 정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김광재 2019, 106).

1919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면, 한국인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독립운동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가 일본과 전쟁한 것이 된다. 안창호 역시 ‘독립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자신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다른 연합국과 함께 싸워 승리한 것이 되므로 우리의 독립은 미국이나 연합국이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싸워 쟁취한 것이 된다.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독립군, 의사,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1945년 해방을 단순히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군정기-제1공화국’의 시기구분법은 문제가 있다. 주권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 된다. 즉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제1공화국’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점령으로 점철된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된 역사로 시기를 구분하게 된다(이나미 2019a).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은 시기구분 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이전에도 지적된 적이 있다. 김희곤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그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며, “군이 침략 국가를 주체로 내세워 ‘일제강점기’라는 이름 붙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항일투쟁기’로 보자고 주장한다(김희곤 2009, 12). 그런데 미군정기 역시 타국, 그것도 타국의 군부를 주체로 내세운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명명방식은 일관성도 없다. 타국에 의해 점령당한 역사를 군이 시기구분에 반영해야 한다면 일찍이 고려 때 원나라의 지배, 임진왜란 때 왜구의 지배, 병자호란 때 청의 지배, 1894년 일본의 경복궁 점령,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점령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상적

또는 불법적 권력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경우는 이외에도 5.16 쿠데타 이후 3공화국 이전 시기, 12.12쿠데타 이후 5공화국 이전 시기가 있다. 이렇듯 정상적 국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시기를 모두 국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넓은 의미의 국가, 즉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개념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군부에 의해 합법적인 국가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광주 시민들은 놀라운 자치 능력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이때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지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나 미군정기도 마찬가지이다.

4. 시민사회의 공화주의 정신

그동안 3.1운동의 정신은 민족주의인 것으로만 여겨졌다가 최근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의 주된 정신이 공화주의이며 따라서 이것이 3월 1일 공화국수립의 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공화국의 구성원은 정의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res publica*는 공적(공중)인 것, 또는 공적인(공중의) 일(*public thing*)을 의미하며, 사적인 것(*res privata*)의 반대말이다(김상봉 2007; 임혁백 2007, 37). *public*(공중)은 다수인데 특정 계급은 아니며, 공공적 주체이다. 키케로는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populus*)의 모임'으로 규정한다(김정희 2007, 121). 그런데 '정의와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화주의 정신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자유, 법치, 협력 등이 공화주의의 가치로 여겨지는데 이 역시 3.1 독립선언서에 잘 구현되어 있다. 독립선언서 뿐 아니라 그것을 읽고 만세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에 공감했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공화주의와 관련되어 있다.¹⁰⁾

- 독립선언은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克明)하며,”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기 위하여,”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

-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인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심령상 발전의 장애,” “민족적 존영의 훼손,” “신예(新銳)와 독창(獨創)으로써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할 기회를 잃었음.

- 그동안 억눌린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廉義)”를 “흥분신장(興奮伸張)”하고, “각개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遂)”하고,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苦恥的) 재산을 유여(遺與)치” 않고,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을 도영(導迎)하려 하면” 독립이 필요함.

- 금일 우리의 소임은 “자기의 건설이 유(有)할 뿐”이지 “결코 타(他)의 파괴에 재(在)치” 않는다는 것이며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지 “결코 구원(舊怨)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他)를 질척배척(嫉逐排斥)함”이 아님.

- 구사상, 구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가의 공명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광정하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케” 함.

-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 출(出)치 아니한 양국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姑息的) 위압과 차별적 불평(不平)과 통계숫자상 허식의 하(下)에서 이해상반한 양 민족 간에 영원히 화동(和同)할 수 없는 원구(怨溝)를 거익심조(去益深造)하는 금래실적(今來實

10) 아래 글 중 인용부호 안이 원문. 띄어쓰기는 필자.

續)을" 지적.

- "용명과감(勇明果敢)으로써 구오(舊誤)를 확정(廓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遠禍召福)하는 첩경임."

- 이천만 민중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전국이 공동동망(共倒同亡)의 비운을 초치(招致)할 것이 명(明)하니 금일 오인(吾人)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영(生榮)을 수(遂)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邪路)로서 출(出)하여 동양 지지자(支持者)인 중책을 전(全)케 하는 것이며 지나(支那)로 하여금 몽매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 문제리오"

- "위력의 시대가 거(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來)하도다. 과거 전세기에 연마장양(鍊磨長養)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始)하도다."

- "아(我)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護全)하여 생왕(生旺)의 낙을 포향(飽享)할 것이며 아(我)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만(春滿)한 대계에 민족적 정화(精華)를 결뉴(結紐)할지로다."

- "양심이 아(我)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我)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古巢)로서 활발히 기래(起來)하여 만휘군상으로 더불어 혼쾌한 부활을 성수(成遂)하게 되도다. 천백세 조령(祖靈)이 오등(吾等)을 음우(陰佑)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吾等)을 외호(外護)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前頭)의 광명으로 맥진(驀進)할 따름"

- "금일 오인의 차거(此舉)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야금 어디까지던지 광명정대하게하라”

둘째, 3.1운동 당시 분야별로 33인의 민족대표를 구성한 것 역시 공정함과 협력을 보여주는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은, 대표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집트혁명의 경우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단결하고 여성도 참여하면서 독립을 달성했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집트에 이미 정당과 의회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사드 자글룰(S. Zaghloul)과 같은 지도자의 권위를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3.1운동은 거의 10년간 일체의 정치·사회적 조직이 금지된 상황 속에 나온 봉기였다. 1910년대는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 3.1운동만큼 자발적인 동시에 전국적인 봉기 양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멕시코, 중국,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 헝가리에서 봉기가 더 끈질긴 경우는 있었으나 3.1운동처럼 지역과 분파와 계층을 막론하고 거족적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권보드래 2019, 61-62).

민족대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표로 자처하고 나섰다. 『조선독립신문』이 1919년 3월 5일자에 13도 각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선독립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알리자 대표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천도교도를 비롯하여 일반 학생, 농민도 자신이 국민대표라고 나섰다(이기훈 2019, 104-107).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의 덕성을 갖춘 이들이 속속 등장한 것이다. 마을이나 지역 단위에서 대표를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3월 8일 췌기 전에 교사 정재순 등 다섯 명을 대표로 뽑았다(권보드래 2019, 61).

셋째, 민족대표 및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화주의적 가치를 지향했다. 33인 민족대표와 독립선언의 권위는 인정되었으나 대표들

이 구속된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대회에 의해 설립되어야 했다. 국민대회 추진 그룹은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임시정부 선포문, 임시정부령 제1호, 제2호 등 유인물을 만들었으며 ‘국민대회’와 ‘공화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들었다. “국민대회는 백성들의 뜻에 기초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했다고 선포했고 임시헌법에서 국체는 민주제, 정체는 대의제를 채택한다고 명기했다. 1919년 4월 격문과 전단들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태극기는 이때부터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의미하기 시작했다(이기훈 2019, 108).

물론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군주제를 당연시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의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서구 고대의 공화주의는 군주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로마의 키케로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모두 *res publica*, 곧 공동선 추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공화정에 반대되는 것은 군주정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폭군정, 과두정, 민주정(중우정 의미)으로, 공화정은 통치자의 숫자가 아니라 통치의 질이 기준이 되는 정체였다(손민석 2018; 박찬승 2013).

따라서 사실상 3.1운동 기간 중 ‘대한제국 만세’라는 구호가 있었고 ‘신민’이란 용어도 여전히 사용되었지만(이기훈 2019, 96) 그것이 반드시 공화주의의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종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모든 백성이 왕을 애도하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민이란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신하된 백성’ 즉 *subject*라는 의미보다는 신하와 백성, 즉 관과 민을 통칭하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 즉 관리,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인민을 지칭할 때 주로 신민이란 개념이 쓰였다. ‘신하된 백성’의 의미로서의 신민은 주로 ‘황국신민’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국민을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존

재로 일컫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이나미 2018).

‘대한제국 만세’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회복적 정의’를 지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국가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이전의 이름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신대한제국독립만세’라는 구호의 등장이 그것을 증명한다.¹¹⁾ 일제가 찬탈한 주권은 이미 죽은 고종과 체결한 것이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한학자 박정현의 주장은(이기훈 2019, 100), 그 강도는 약하지만 순종이 주권을 포기할 때 주권이 인민에게 넘어왔다고 한 대동단결선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조선인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보면 유럽들에게도 공화주의적 정신이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실상은, 1907년 고종 폐위 후부터 국왕 교체나 입헌군주제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 각종 출판물에서 ‘혁명’이란 단어가 범람했고 타 공화국 헌법의 사례가 광범하게 토론되었다. 충군의 의병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1915년 대한광복회로 합해졌으며 『대동단결선언』으로 군주제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3.1운동을 통해 대중은 (망명) 공화국을 추동해냈고 또한 스스로 공화국의 (잠재적) 국민이 되었다.”(권보드래 2019, 114-115).

1911년 신해혁명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소앙은 본래 성균관 유생 출신으로 근왕주의자였으나 『손일선전(孫逸仙傳)』을 구해 읽고 공화주의에 눈을 떴다. 신민회원 조성환은 신해혁명 소식을 계속해서 안창호에게 전했는데 그에게 신해혁명은 “4000년 노 대제국의 부패한

11) 이기훈은 ‘대한제국 만세’를 외친 이들에게 공화국은 낯선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 역시, 당시 고종 죽음에 대한 애도, 제국에 대한 향수는 있었으나 근왕주의적 구호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유럽들 일부도 군주에 대해 애착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이기훈 2019, 98-100).

전제를 타파하고 대륙에 영예로운 공화정체를 건설"한 경축할 만한 사건이었다. 박은식 등 개신유학자도 신해혁명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또한 민필호처럼 신해혁명 후 중국 망명을 선택한 이들이 급증했다(권보드래 2019, 256-257).

손병희는 검찰에서의 제3차 신문에서 "조선이 독립되면 어떤 정체의 나라를 세울 생각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민주 정체로 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인쇄소 보성사 간사였던 인종익은 "현금의 세계를 보건대 모두 민주 공화 정체이므로 이에 따라 물론 민주 공화 정체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4월 23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는 '공화만세'라고 쓰여진 깃발이 등장했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방면에서 온 시위대들도 '국민대회'와 '공화만세' 깃발을 휘둘렀다. '조선독립', '국민대회', '공화만세' 등의 깃발은 전국적으로 발견된다. 3대만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황해도 수안군 주민은 3월 3일에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이다. 속히 분대를 명도하라"며 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하던 천도교구실 소사 이영철은 "대한제국은 오늘로 독립하였고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다"면서 "자유와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라고 외쳤다. 평안북도 선천에서 작성된 선언서에는 "우리 조선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신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적혀있었다(권보드래 2019, 102-106).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신문 등 각종 인쇄물의 공이 컸다. 황해도 곡산군 화천면의 농민 김두환은 "본시 초야의 우민으로 누항에 궁거하여 겨우 반생을 보내고 있던 차 시대의 상태에 놀라 칩거의 꿈을 깨고 매일신보 및 반도신보를 열람"하여 민족자결주의 등을 익히게 되었다고 했다. 황해도 봉산군 영천면의 서당 교사 김해술, 평안남도 용천군 양강면의 서당 교사 김지혁 등도 매일신

문, 매일신보 등을 통해 세계정세를 파악했다. 사람들은 심지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약소민족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소이유서에 피고들이 가장 자주 인용한 사례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였고 그 밖에 헝가리,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다양한 실례를 언급했다. 식자층은 매일신보, 도쿄아사히신문, 오사카마이니치신문 등과 영자신문까지 읽었고, 글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정세를 학습했다. 부녀자까지 ‘민족자결,’ ‘독립만세’라는 말을 자주 했다.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의 한 농민은 “세계 평화회의가 열려 타국에 점령당한 약소국은 빠짐없이 독립하고 있다. 우리 조선도 독립이 달성되는 이 마당에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라는 말로 면장을 설득하려 했다고 한다(권보드래 2019, 144-145). 일제강점기 동안 심지어 강도까지 ‘시국표명’을 하면서 재물을 강탈했다. 이 시기 신문지상에 간혹 등장하곤 했던 ‘시국표명강도’는 부잣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주인에게 시국에 관한 입장연설을 한 다음에 주인에게 금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러면 혼이 나간 주인들은 강도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한다(이나미 2019b).

3.1운동 시기 시위대들은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폭력적 응징을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 사이에 격론이 자주 일어났으나 거의 후자가 최종적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면사무소, 주재소를 파괴했으나 인명을 다치지 않게 하려 했고 반역자를 응징하긴 해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권보드래 2019, 332).¹²⁾

12) 우리말 ‘응징’은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깨우친다’는 의미도 포함한 개념으로, ‘복수’와 다르다. 슈라이버 2세는 복수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테러, 보복(vindictiveness, retaliation), 처벌(punishment), 보상 restitution) 또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저항(protest), 수동성(passivity)을 구분한다. 테러는 ‘우리의 눈 하나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상대의 모든 눈에 피해를 준다’는 것, vindictiveness는 ‘우리의 눈 하나가 피해를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각종 조직들이 공화주의적으로 구성되었다. 1913년에 설립된 흥사단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 공화제 원리로 조직을 운영했다. 즉 의사, 이사, 심사의 삼권분립 체제를 두었고 임원은 단우의 직접투표로 선출했다(김영재 2011, 147). 3.1 운동에 가장 공이 큰 천도교 조직은 가상국가에 가까운 자율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헌법에 해당하는 '대헌'을 두고 의회와 유사한 의사원을 설치했으며 행정부에 해당하는 각종 부서를 운영하여 망명정부, 작은 나라와 같은 면모를 과시했다(권보드래 2019, 138). 원불교 창시자 박종빈은 1920년에 '남녀권리동일'을 선언했고(장지혜 2018, 21), 1927년 설립된 신간회는 민족 예측의 탈피 뿐 아니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주장했으며 청소년과 여성의 형평운동을 지원했다.

5. 정치사회의 공화주의 정신

일제강점 직후부터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사회도 그 존재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한국인의 지지를 얻는 항일적 정치사회가 한반도 안에서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항일투쟁 및 임시정부 구성 노력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서로 연대하는

입으면 상대의 두 눈에 피해를 준다'는 것, retaliation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그만, 처벌은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도 이에 응답하지만 반드시 상대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가 파기한 기준을 다시 주장'하는 것, 보상 또는 회복적 정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것, 저항은 '잃어버린 체로 살지만 불의는 소리 높여 고발하자는 것 이외는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수동성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좌우명을 가진 것으로, 테러와 마찬가지로 무질서와 무법성이 특징이다. 테러가 권력자의 무질서라면 수동성은 권력이 없는 자들의 무질서이다(도널드 W. 슈라이버 2세 2001, 73-74; 이나미 2019).

것은 식민지 상황의 특징일 것이다. 일제강점 직후 등장한 해외 한인
의 대표적 정치단체는 대한인국민회다. 1910년 9월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 건설 시도를 본격화하면서 해외 최고통일기관인 중앙총회
설립을 촉구했다(신한민보 1910.9.28.). 10월 5일 신한민보는 “대한인의
자치기관”이란 논설을 통해 국민회를 임정으로 설립하자는 견해를 피
력했다(김도훈 1999, 256).

오늘 우리는 나라가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니 ... 대한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독일무이한 목적을 정한 자 대한인국민회밖
에는 없을지니 ... 대한인 국민단체에 마음을 기울여 완전한 자치
기관을 정할지이다. (중략)

미주에 있는 동포는 국가에 대한 세납의 의무를 대신하여 사
회에 공헌하기로 의논이 일치하며 하와이에 있는 동포는 국민회
의 중앙기관을 속히 설립하기로 제의가 되어 유지제공의 의견이
일치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한인국민회는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이 확연히 되었도다 이제 형질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
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율흥하기를 시작하니 어찌 희
망이 깊지 아니함이요 고로 본 기자 이에 대하여 두어 가지 의견
을 제공에게 제창하여 연구하는 재료를 삼게 하노라

- 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을 총히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
정부의 자격을 의방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할 일

- 내외국민이 신앙할 만한 명예 있는 이를 받들어 총재를 삼아
중대사건을 고문케 할 일

- 회원과 아님을 물론하고 각국 각지에 있는 대한국민에게 그
지방 생활 정도를 따라 얼마씩 의무금을 정하여 전체 세입세출
을 정관할 일

- 일체 회원은 병역의 의무를 담임할 일 다만 연령에 따라(신
한민보 1910.10.5.; 김도훈 1999, 257)

신한민보 1911년 1월 25일자 “진보를 하는가 퇴보를 하는가”라는 기사에서는 “오늘날 대한인국민회는 다만 재외동포의 정신을 통일하는 기관뿐 아니라 이천만 민족사회에 둘도 없는 다만 하나의 정당이라 하여도 헛된 말이 아닐지며 장래의 신한국을 건설하는 주초라 하여도 그 책임을 사양치 아니할지라 이제 미주 하와이 멕시코로부터 아령 원동과 청령 극동에 이르기까지 처처에 설립되는 바 대한인국민회 뿐이니”(김도훈 1999, 257-258)라고 하여 정당을 자처했다.

박용만은 “원래 국가의 성립은 백성과 토지로 기초를 삼고 법률과 정치로 집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하나 시방 우리는 백성은 있고 토지는 없어 불가불 남의 토지 위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고로 무형한 국가”라 하였다(신한민보 1911.5.17). “대저 나라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합하여 성립된 것이니 첫째는 백성이오 둘째는 정치기관이오, 셋째는 토지라 ... 무슨 남군을 두거나 대신을 두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 동포가 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정치법률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고 했다(신한민보 1911.4.19). 또한 “우리 신한국민은 전일에 몇 사람의 손으로 농락하던 전제정치를 박차고 출발아 이 세상에 용납지 못하게 할 것이오 일반 인민의 사상을 통괄하여 국민의 정신을 대표할 만한 자로써 정사를 행케 하여 일반 국민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우리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이니 우리가 스스로 복종할 의무가 있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그 가운데서 가정부가 변하여 진정부가 되어 무형한 국가가 자라서 유형한 국가가 될지니”(신한민보 1911.9.20.)라고 하여 공화제 국가를 언급하고 있다(김도훈 1999,258-264)..

국민회는 실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1913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한인 11명이 일본인으로 오인되어 농장에서

축출당할 때 일본영사가 개입하려 하자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가 미국 국무장관 브라이언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 영사의 간섭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미 국무장관에게서 국민회를 재미 한인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국민회는 “금년에 미국정부와 교섭하여 미주 있는 한인은 일본정부에 다니지 않고 한인 사회에서 자치하는 허가를 얻은 후에 다시 미국 상공부와 교섭하여 한인은 여행권(빙표)이 없이 미국에 상륙하게 한 후에 벌써 수십 명이 여행권 없이 미국에 상륙하였는데 미국 이민국에서 우리 국민회를 한국 정부와 같이 대접하니 ... 본 총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헌장을 시행하며 정부와 같이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니”(신한민보 1913.9.12.)라고 하여 정부 역할을 자임했다. “지금부터는 완전한 대한 국민의 무형한 정부 모양으로 미주에 있는 국민에게 상당한 의무를 청하여 그의 직무를 다하게 하고 공정한 보호를 베풀어 그의 생명 재산을 안돈케 하여 일체로 그 사회 아래 완전한 국민이 되기를”(신한민보 1913.11.14.) 요청했다. 1914년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의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허락을 얻어 자치정부로 인정받게 된다(김도훈 1999, 267-268).

대한인국민회는 “완전한 헌법공화국의 제도에 의지하여 조직된 단체”로 “완전한 국가를 세우고자”(신한민보 1913.12.5.) 자치규정을 통해 국민회의 처벌에 불복하거나 적국을 돕는 행위에 대해 공권을 박탈하고 법정에 징치할 것을 명시하여 명실공히 자치정부로서 국민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신한민보 1914.6.4.). 또한 “우리나라 가정부를 대표한 국민회가 태평양 연안과 원동 각처에서 고국의관을 보존하여 부여 민족의 끊어진 운명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신한민보 1914.2.5., 2.26; 김도훈 1999, 268).

1919년 3.1운동이 이룩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수립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3.1 만세시위는 혁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

는 또한, 전 세계 각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혁명적이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이후에 제정된 헌법에 계속 이어졌을 뿐 아니라 이승만 독재를 타도한 4월혁명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8).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촛불집회 시그널 곡도 되었다. 민주공화제는, 국가를 세울 때도, 국가를 비판할 때도, 국가를 바꿀 때도 기준이 되었다(이나미 2019b). 민주공화는 공화보다 더 평등이 강조된 개념으로, 삼권균의를 주장한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기초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한인섭 2009; 이관후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실제 위상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군정이 임정을 인정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그 정통성과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프랑스 임시정부도 연합국의 승인을 쉽게 얻지 못했다(이해영 2019, 31). 프랑스 역사 설명을 보면 나찌의 괴뢰정부인 비시 정부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드골 임시정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총독부 지배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여 일제의 통치에 비중을 두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그저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생겨난 것처럼 다룬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모든 법령, 행정을 무효화한 반면 우리의 경우 일제 법령이 미군정, 심지어 1공화국에서 여전히 통용됐다. 1공화국 시기 계엄법도 일제의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결과다(이나미 2019b).

대한민국 임정은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므로 그것에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하여 같은 해 9월 11일 8장 58개 조의 임시헌장을 공포함으로써 임시정부 간의 통합을 완료했다.

임정은 조선 내 '국민'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못했으나 분명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헤게모니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는 지식인들, 교회, 조합들, 신문 등등의 매체를 통하여 계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행위의 정신적 결과이다."(G. Hunt 1986; 이규영 1995, 645). 우리의 경우 목표는 계급지배가 아닌 '민족 지배'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수단은 지식인들, 독립운동단체들, 정당들, 신문 등이다. 신한민보는 1919년을 '민국 1년'으로 파악하여 년도를 쓸 때 '민국 ~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각종 정당들은 임정의 여당 또는 야당을 자처했으므로(신주백 2018), 우리의 정치사회도 굳건히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1919년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결합체로서 조선인의 지지를 획득한, 명실상부한 국가였다.

당시 해외동포들도 임정을 인정했다. 멕시코, 쿠바의 동포사회까지도 임정을 인정하고 지원했다. 임정은 만주지역 독립군들을 귀속시켰고 직접 장교를 양성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름으로 외교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희곤 2009, 18-20). 안창호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임시정부와 의정원이 이미 성립된 지 3년이란 시간을 지냈고, 대내적으로 말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으로부터 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가면서 한국 사람 보고 묻기를 너의 정부와 의정원이 있느냐 하면, '네 우리 정부와 의정원은 상해에 있습니다.'고 대답합니다. 또는 중국령이나 러시아령이나 미국령을 물론하고 해외에 있는 교민이 다 우리의 의정원과 정부가 상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존한 우리의 의정원과 정부를 전체 국민이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열국으로 말하여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이 아직 우리의 정부

와 의정원을 정식으로 승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존한 우리의 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임정은 1923년부터 내부 분열로 인해 활동도 미약하고 외부의 비판도 컸으나 1940년부터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한다. 또한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정부를 가지고 27년간 독립운동을 한 것은 전무후무하며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은 것도 임정의 큰 성과다. 따라서 네루는 아시아 식민지 국가 중 열강에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부러워했다(김희곤 2009, 21). 임정은 무능함과 분열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그것이 정통성 불인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우리 역사를 통틀어 과연 유능하고 결함없는 정부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임정은 사실상 '임시성'을 많이 넘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에서 '임시'보다는 '정부'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로 안창호가 임시정부를 언급할 때 '임시'를 빼고 '정부'란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식민지 조선 전국에서 임정을 알았고 많은 조선인들이 그 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생각했다. 즉 조선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일본이나 조선총독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존재했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임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1919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는 헌법의 규범력을 수호할 근원적 힘으로서 헌법의 주체인 시민과 분리된 채 건설된 임시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시민의 감시와 견제도 불가능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이승택 2013).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 맺음말

이 글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건국절 논쟁에 '3.1절을 공화국 수립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이 선포되었고 그 선언은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후 제정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하였으므로 3월 1일을 공화국 수립의 날로 제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그간 지난한 건국절 논쟁을 마무리할 방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하면 8.15 해방은 외세 만이 아닌 한국도 함께 싸워 쟁취한 것이 된다. 이 제안은 우리 역사의 시기구분도 다시 보게 한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등 외국의 점령으로 점철된 굴욕적 역사가 아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우리가 주체가 된 역사로 다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글은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세웠으며 그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공화주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2019년 10월 13일 접수, 11월 14일 심사완료, 11월 15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보드래. 2019. 『3월 1일의 밤』. 파주: 돌베개.
- 김경희. 2007.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30(1).
- 김광재. 2019.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 『법학논총』. 39(1).
- 김도훈. 1999. “1910년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
- 김영재. 2011. “그리스도인이 보는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창간호.
- 김호기. 1993.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경제와사회』. 19.
- 김희곤. 2009.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수립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48.
- 『미디어오늘』 2018.8.13. “1948년 건국 재점화 토론회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파주: 돌베개.
-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파주: 돌베개.
- 손민석. 2018.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담론.” 『개념과 소통』. 22권.
- 신주백. 2018. “‘민주공화제’론과 비자본주의를 지향한 ‘민족주의운동 좌파’(1919~45).” 『역사와 현실』. 108.
- 안창호. 2015.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게』. 서울: 지성문화사.
- 윤대원.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 이관후. 2019.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의 형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파주: 한울.
- 이규영. 1995.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한국정치학회보』. 28(2).
- 이기훈. 2019. “3.1운동과 공화주의.” 『역사비평』. 127.
- 이나미. 2018. “‘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담론201』 21권 3호.

- 이나미. 2019a.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에 관한 재고찰.” 『내일을 여는 역사』 . 74호.
- 이나미. 2019b. “중단 없는 민주주의 혁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 파주: 한울.
- 이승택. 2013.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고려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영록. 2017.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 . 24권 1호.
- 이영재. 2019. “한국 정치적 근대화 해석의 단절과 비약.”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재해석』 . 한국정치연구회 2019년 4월 학술토론회 자료집.
-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탄핵 광장의 안과 밖』 . 책담.
- 이해영. 2019. 『임정, 거절당한 정부』 . 파주: 글항아리.
- 임혁백. 2007. “공공성의 붕괴인가, 공공성의 미발달인가.” 『사회비평』 . 38.
- 장지혜. 2018. “여성 유일 불법연구회 창립발기인 오타원 이청춘.” 제227차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발표연구회.
- 전종익.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법사학연구』 . 56.
- 조덕천. 201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한국 근현대사연구』 . 82.
- 지수걸. 2016.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 『내일을 여는 역사』 . 64.
- 표광민. 2019. “통일 이후 독일의 화해사상.” 한국정치사상학회 2019년 9월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 한인섭. 200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 50집 3호.

3.1 Movement and Republicanism

Lee, Na-m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n March 1, 1919 and to re-examine the Republican spirit of the 3.1 Movement. Furthermore, I propose to commemorate March 1 as "Republic Day" to help resolve the controversial "National Day" debate. Almost all Korean people agree with the nationality and legitimac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many countries that have had colonial experiences make the day of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founding day.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tained the spirit of republicanism, and man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ere aimed at republicanism. The civil society of Korea, which created the March 1st Movement, formed a political society and established a government on its own, and its spirit was republican with universal values.

Key Words: 3.1 Movement, Republic, republicanism,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Day